

제 7 부  
그 밖의 규정

제 20 장  
예 외

**제20.1조 일반적 예외**

1. GATT 제20조와 그 주해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승계하는 협정의 동등조항은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이룬다.
  - 가.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한 제2부, 그리고
  - 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한 제15장.
2. GATS 제14조 가호, 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포함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이룬다.
  - 가.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제2부,
  - 나. 제11장,
  - 다. 제12장, 그리고
  - 라.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내에서 제15장.

**제20.2조 국가안보**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당사국에 대해 그 공개가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하는 것,
  - 나. 일방 당사국에 대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1)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 그리고 군사시설에 공급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취해지는 그 밖의 상품과 재료의 거래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조치,
    - (2) 전시나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긴급상황시 취해지는 조치, 또는
    - (3) 핵분열 또는 핵융합 물질이나 이러한 물질이 추출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또는
  - 다. 일방 당사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의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자유무역위원회는 제1항 나호와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의 종료에 대해 가능한 한 전체 내용을 통보받아야 한다.

### 제20.3조 과세

1. 이 장의 목적상,

**조세협약**이라 함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및 약정을 말한다.

**조세 및 과세조치**라 함은 제3.1조에서 정의된 “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조세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조세협약간에 상호 배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상호 배치되는 한도내에서 우선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 및 동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들은 GATT 제3조가 과세조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 제20.4조 국제수지

1. 일방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해 있거나 그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당사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그리고 국제수지 및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포함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제한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조치는 비차별적이고,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고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고, 적용 가능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들과 부합하여야 한다.

4. 제한조치나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택한 당사국은 즉시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이의 철회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

5.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자유무역위원회내에서 즉시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당해 당사국의 국제수지 상황 및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조치들을 평가한다.

- 가.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의 성격 및 정도,
- 나. 협의 당사국의 대외 경제 및 무역 환경, 그리고
- 다. 사용가능한 대안적 시정 조치.

6. 이러한 협의에서는 제한조치가 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국제통화기금이 외환, 통화보유 및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제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들은 수락되어야 하며, 협의의 결론은 협의 당사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